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4. 11. 13. ~ 1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00”을 “398”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3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74”를 “372”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88”을 “187”로 하고, 일반직 계 “186”을 “1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6”을 “155”로 한다.

별표 4 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생략) ③ <u>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u> ④ (생략)	제30조(한시정원)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0</u>	<u>398</u>	-2
·	·	·	
·	·	·	
일반직 계	<u>399</u>	<u>397</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74</u>	<u>372</u>	-2
·	·	·	
·	·	·	

[별표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88</u>	<u>187</u>	-1
·	·	·	
·	·	·	
일반직 계	<u>186</u>	<u>185</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6</u>	<u>155</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09